



민간위탁 일반법 제정 시도의 궤적

2017년안과 2024년안의 조문 대조

작성	위탁관리 본부장
검수	연구소장
www.kiem.re.kr	

요약

보고서의 대상

민간위탁 일반법 제정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4. 12. 2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1981년 민간위탁이 도입된 이래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행정규칙인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를 **법률로 격상하려는 시도**가 이번으로 세 번째임.

세 번의 시도는 같은 이름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함 — 2017. 4.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안번호 2006746)이 임기만으로 폐기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의 재추진도 폐기되었으며(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년안은 종전 법률안을 수정·보완한 재입법임. 기본 구조는 유지되었으나 **통제의 강도가 조문마다 올라간** 것이 이번 안의 특징임.

이 보고서는 2017년안과 2024년안의 **조문을 직접 대조**하여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민간위탁 운영 현황(2023년 말 기준)으로 이 법률안이 대상으로 삼는 지점을 확인한 것임. I장은 제정 시도의 경위를, II장은 민간위탁의 현황을, III장은 두 법률안과 현행 규범의 대조를, IV장은 실무의 접점을 다룸.

용어는 다음과 같이 사용함 — **법정위탁**은 법령이 민간위탁사무와 수탁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민간위탁이고(제정안 제2조제5호), **재검토기한**은 법정위탁의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다시 살피도록 법령에 명시하는 기한임.

방법은 문서 대조임 — 조문은 의안원문과 입법예고안 전문에서 확인하고, 현황 수치는 보도자료에 수록된 값을 옮겼음. 게시 시점에 **국회 제출 단계인** 법률안이므로 확정된 법률이 아님을 전제로 읽어야 함.

제정 시도	민간위탁 사무	법정위탁 비중	위탁기간 상한
3회	1,643개	77%	3년 신설

보고서 핵심

2024년안은 2017년안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음** —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공개모집 원칙,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종합평가와 공개가 그것임. 달라진 것은 **통제의 강도임** — **위탁기간 3년 상한**이 신설되고, 재위탁 금지의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로 넓어졌으며, 종합평가는 **매년** 실시로 바뀌고 성과평가·종합평가의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었음. 제재도 시정 권고에서 **시정 요구와 감사원 감사 의뢰**로 올라갔음. 1,643개 사무 가운데 **법정위탁이 77%**인 현황에서 실무상 영향이 가장 큰 조문은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규정임.

I. 제정 시도의 경위

01 일반법 부재의 규범 상태

현행 규범의 층위

정부조직법·위임위탁규정·
처리지침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율하는 규범은 법률의 층이 얇음. 법률의 층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의 위임 근거가 있을 뿐이고, 운영의 실질은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인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이 담당하여 왔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각 자치단체의 조례가 따로 규율함.

표 1. 민간위탁 규범의 층위 (게시 시점)

구분	규범	내용
법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위탁 근거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민간위탁의 정의, 수탁기관 선정·지휘감독·계약의 기본 사항
행정규칙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공개모집·재위탁 제한·감사 등 실무 처리 기준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사무 — 이 법률안의 적용 대상이 아님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12. 24.)의 비교표와 각 규범을 본 연구소가 정리

규범의 격이 낮다는 것은 절차의 강제력이 약하고 부처를 가로지르는 **공통의 관리 체계를 세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뜻함. 계획 수립과 종합평가에 현행 대통령령·지침의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 줌.

학계의 문제 제기

신상민(2014)·최윤영(2014)

이 상태의 문제는 학계에서도 지적되어 왔음. 신상민(2014)은 행정권한의 위임과 구별되는 **「행정사무의 일부 이전」**으로서 민간위탁을 검토하면서, 현행 체계에 **위탁 범위의 판단기준과 사후 관리·감독의 공백**이 있음을 지적하고, 효율성·수익성의 개선,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서비스 질의 유지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음.

근거 규범의 체계를 다룬 연구도 있음. 최윤영(2014)은 헌법 제96조와 제118조제2항,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그리고 당시의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로 분석하면서 **조례의 역할**을 함께 검토하였음.

I. 제정 시도의 경위 (계속)

02 세 번의 제정 시도

제정 시도의 연혁

의안원문·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표 2. 민간위탁 일반법 제정 시도의 경과

구분	시기	경과
제20대 국회	2017. 4.	4. 4. 국무회의의 통과 → 4. 13. 정부안 제출(의안번호 2006746) → 임기만료폐기
제21대 국회	—	제정 재추진 → 폐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밝힌 경과)
제22대 국회	2024. 9.~10.	부처협의
	2024. 9. 23.~11. 4.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11~12월)
	2024. 12. 24.	국무회의의 의결 → 12. 26. 국회 제출(의안번호 2207018)

자료: 2017년 의안원문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12. 24.)를 본 연구소가 정리

세 시도의 제안이유는 문면이 거의 같음. 2017년안과 2024년안 모두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수탁기관을 원칙적으로 공개모집하며, 법정위탁에 재검토기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밝히고 있음. 소관 부처의 이름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바뀐 것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것임.

제출의 형식도 두 번 모두 **정부 제출 법률안**임. 의원 발의가 아니라 소관 부처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는 경로를 택하였다는 것은, 이 법률이 **부처를 가로지르는 관리 체계**를 세우려는 성격의 것이어서 정부 내부의 합의가 먼저 필요하였다는 사정을 보여 줌.

2017년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이 법률이 상정한 기구의 성격을 보여 줌. 정부는 두 위원회의 설치에 **상설 기구가 아닌 자문 위원회**로서 소규모의 행정적 비용만 발생하며 연평균 예상비용이 10억원 미만이라고 밝혔음. 위원회를 새로 두더라도 조직과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심의 기구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임.

2017년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는 것은 국회의 심사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임기 안에 처리되지 못하여 소멸**하였음을 뜻함. 제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다음 국회에서 다시 제출되는 경로가 열려 있었던 것임.

I. 제정 시도의 경위 (계속)

03 재입법의 근거

문제 진단의 두 갈래

감사원 감사와 실태조사

제정의 계기로 제시된 것은 두 갈래의 점검임. 행정안전부는 1981년 도입된 민간위탁 운영이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주관 실태조사(2023~2024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밝혔음.

표 3. 제정의 근거로 제시된 문제 진단

구분	내용	대응하는 조문
대상 선정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한 사례	사무 선정의 고려사항, 운영위원회 심의
감독 구조	유관단체가 수탁기관이 되어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관리·감독	관리·감독의 절차, 상위 종합평가
독점의 장기화	독점위탁이 이어지면서 수탁기관의 경쟁력이 저하	공개모집 원칙,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12. 24.)가 밝힌 지적 사항을 본 연구소가 조문과 대응시킴

세 문제는 제정안의 조문과 하나씩 대응함. 제정안의 구성이 진단에서 곧바로 도출된 형태이며, 이는 두 법률안의 장 구성이 거의 같은 이유이기도 함 — 같은 진단 위에 서 있기 때문임.

2017년안의 배경이 감사원 감사였다면, 2024년안에는 **부처 자체의 실태조사가 근거로 더해진** 것임. 같은 문제가 10년의 간격을 두고 다시 확인되었다는 사정이 재입법의 논거로 제시된 셈임.

제안이유의 문면이 같은 가운데 **목적 조문에는 변화가 있음**. 2017년안 제1조가 「민간위탁사무의 선정원칙, 수탁기관 선정절차, 관리·감독」을 들었다면, 2024년안은 그 앞에 **「민간위탁 추진체계」**를 더하였음. 위원회와 계획 체계를 이 법률의 목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며, 제2장의 표제가 「민간위탁 추진체계」인 것과도 맞물림.

부처가 밝힌 기대도 관리 체계에 놓여 있음. 행정안전부는 이 법률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와 협력하여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음.

진단의 성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 문제는 개별 부처의 잘못이나 특정 사무의 문제라기보다 **관리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로 제시되었음. 개별 감독의 강화가 아니라 일반법의 제정이라는 처방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음.

II. 민간위탁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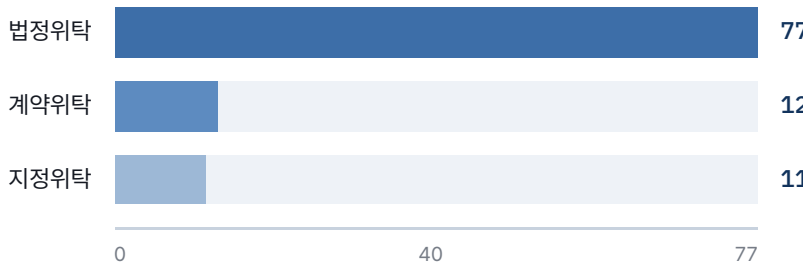
04 위탁 형식의 구성

규모와 형식

2023년 말 기준 현황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현황은 **42개 중앙행정기관이 1,643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다는 것임 (2023년 말 기준). 이 사무들이 어떤 형식으로 위탁되어 있는지가 이번 법률안의 설계를 좌우함.

그림 1. 위탁 형식의 구성 (2023년 말 기준, %)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12. 24.) 참고1

법정위탁이 77%로 압도적임. 법정위탁은 법령이 수탁기관의 명칭까지 특정한 위탁이므로 공개모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수탁기관이 바뀌지 않음. 제정안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정위탁에 재검토기한을 두고 전환 노력 의무를 부과**한 이유가 이 분포에 있음.

제정안이 정의하는 민간위탁은 **명칭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수행하게 하는 것임(제2조제2호). 계약서의 표제가 무엇이든 명 의와 책임이 민간에 넘어가면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며, 용어의 혼용이 적용 범위를 흐리지 않도록 한 장치임.

1,643개라는 수치도 이 정의를 기준으로 집계된 것임.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나 실질이 민간위탁인 사무가 어떻게 집계되었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수치는 **부처가 민간위탁으로 보고한 사무의 수**로 읽는 것이 적절함.

정 의가 「명칭에 관계없이」로 시작한다는 것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임. 위탁·위임·대행 등 용어가 실무에서 혼용되는 사정을 전제하고, 이름이 아니라 명 의와 책임의 귀속으로 적용 여부를 가르는 방식임.

세 가지 형식은 **수탁기관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갈림. 법정위탁은 법령이 수탁기관의 명칭까지 적어 둔 것이고, 지정위탁은 행정기관이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며, 계약위탁은 선정 절차를 거쳐 계약으로 정하는 것임. 공개모집과 경쟁의 원리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계약위탁에 한정됨.

II. 민간위탁의 현황 (계속)

05 위탁 형식별 규율의 차이

형식에 따른 접근

제22·23조

제정안은 이 사정을 전제하고 형식마다 다른 규율을 둬. 법정위탁은 공개모집의 예외로 두되 **존속 자체를 주기적으로 다시 묻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음 — 제22조는 법정위탁 외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23조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법정위탁에 재검토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함.

표 4. 위탁 형식별 규율의 적용

구분	수탁기관이 정해지는 방식	제정안의 규율
법정위탁	법령이 수탁기관의 명칭을 특정	공개모집의 예외 — 대신 전환 노력 의무와 재검토기한 (제22·23조)
지정위탁	행정기관이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	공개모집 원칙의 적용 대상 — 요건에 해당하면 모집 대상 제한 가능
계약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계약으로 결정	공개모집·선정기준 공개·이의신청·위탁기간 상한이 온전히 적용

자료: 제정안의 조문과 보도자료의 형식 구분을 본 연구소가 대응시킴

재검토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위탁기관이 법정위탁의 종료 또는 수탁기관의 변경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제정될 경우 법정위탁에도 **5년 주기의 점검이 들어오게** 됨.

재검토기한의 정의도 조문에 넣어 있음 — 점검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정위탁에만 적용되는 기한이라는 것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것은 대상에서 빠짐.

그러므로 실무의 관건은 **「명백한 사유」의 판단**이 됨. 이 판단이 넓게 이루어지면 재검토의 대상이 줄고, 좁게 이루어지면 다수의 법정위탁이 5년 주기 점검의 대상이 됨. 조문은 세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제정 이후의 하위법령이 이 규정의 실효를 좌우하게 됨.

부칙은 이 작업에 시간을 줌. 위탁기관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시행 당시 소관 법정위탁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재검토를 한 번에 하지 아니하고 5년에 걸쳐 나누어 하도록 한 설계임.

II. 민간위탁의 현황 (계속)

06 사무 유형과 기관별 분포

유형별 비중

보도자료 참고1

표 5.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별 비중 (상위 3개)

구분	비중	비고
확인·조사	22%	
검사·승인	13%	
신고·등록	9%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12. 24.) 참고1

상위 유형이 확인·조사와 검사·승인이라는 사실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들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라는 위탁의 기준 안에 있으나, 그 처리의 결과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아니한 영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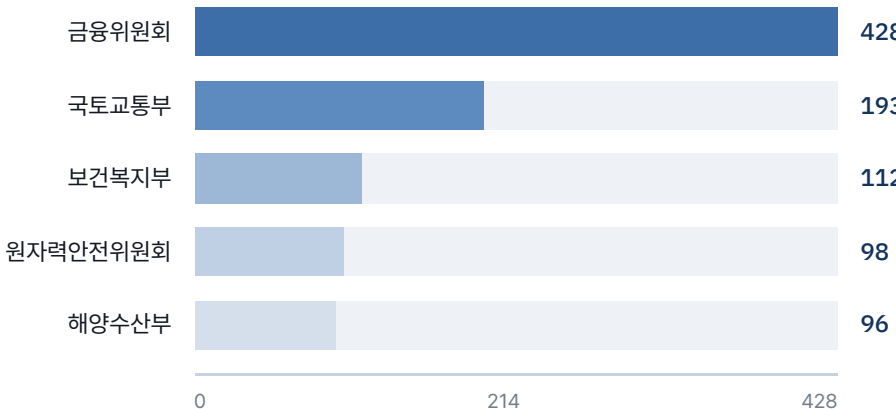
제정안이 사무 선정의 고려사항에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넣고, 진단에서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의 위탁」을 문제로 든 것도 같은 맥락임. 사무의 유형이 위탁의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더라도, 그 사무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요청임.

상위 기관의 집중

기관별 사무 수

1,643개 사무는 42개 기관에 고르게 놓여 있지 않음.

그림 2. 민간위탁 사무 수 상위 5개 기관 (2023년 말 기준, 개)



자료: 같은 보도자료 참고1의 기관별 집계

II. 민간위탁의 현황 (계속)

07 분포의 편중과 평가 체계

기관별 편차의 함의

운영위원회 설계와의 관계

금융위원회 한 기관의 428개 사무는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 규모임.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74개,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각 56개, 고용노동부 51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9개, 행정안전부 44개, 교육부 43개, 환경부 40개의 순임. 반면 사무가 한두 개에 그치는 기관도 여럿임.

이 편중은 제정안의 **운영위원회 설계와 맞물림**. 제정안은 위탁기관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어 사무 선정부터 성과평가까지 심의하도록 하는데, 428개 사무를 다루는 기관과 한두 개를 다루는 기관에 같은 기구를 두게 되므로 **기관별 부담의 편차**가 생김.

2024년안이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넓히고 소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유지한 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 조정으로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조문에 그 이유가 적혀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운영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남아 있음.

평가 체계의 연구 배경

최순영(2019)

제정안이 담은 종합평가의 설계에 관하여는 앞선 연구가 있음. 한국행정연구원은 2019년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방안 연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민간위탁 관리·감독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민간위탁이 부처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진단 아래 **종합평가의 거버넌스와 평가 기준·지표**를 제안하였음. 미국과 영국의 사례 검토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병행하였고, 안전 관련 사무의 환원 필요성도 함께 논하였음.

2017년안이 폐기된 뒤에도 종합평가의 방법에 관한 연구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2024년안이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로 바꾸고 평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됨.

종합평가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부처가 올려 보내는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제정안은 위탁기관이 관리·감독의 결과를 **연 1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감사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함. 종합평가는 이 제출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처의 기록 관리가 상위 평가의 전제가 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관리·감독이나 평가를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두 안에 공통으로 놓여 있음. 부처마다 개별 법령에 따른 감독 체계가 이미 있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며, 중복 부담을 줄이는 장치로 볼 수 있음.

다만 갈음의 요건이 「협의」로 되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갈음을 인정할 것인지는 **운영의 실제에 맡겨져** 있음. 종합평가의 실효성은 이 협의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음.

III. 규범과 조문의 대조

08 현행 규범과 법률안의 대비

신설되는 규율

보도자료 참고3의 비교표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에 현행 대통령령·지침과 제정안을 항목별로 대비한 표를 실었음. 이 대비에서 **「관련 규정 없음」에서 새로 생기는 규율**이 무엇인지가 드러남.

표 6. 현행 규범과 제정안의 대비

구분	현행	제정안
위원회	대통령령에 규정 없음. 지침이 부처 운영위원회 심의를 정함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 + 부처 운영위원회 를 법률로 설치
계획 수립	대통령령·지침 모두 규정 없음	행정안전부 5년 기본계획 + 부처 매년 시행계획
독점위탁 제한	공개모집 규정은 있으나 선정기준·배점·결과의 공개 규정 없음	공개모집 원칙 + 기준·배점·결과 공개. 법정위탁은 전환 노력과 5년 내 재검토
재위탁 제한	대통령령에 규정 없음. 지침이 원칙적 금지를 정함	법률로 원칙적 금지, 필요한 경우 법령에 근거
계약 체결	선정 후 계약 체결 — 지침은 결과 공개를 정함	계약 체결과 결과 공개를 법률로 규정
관리·감독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취소·정지와 지시·조치 명령	취소·정지에 더하여 계약 위반 시 해제·해지 근거
성과평가	대통령령·지침 모두 규정 없음	부처 성과평가 후 재계약 반영 + 행정안전부 종합평가와 공개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12. 24.) 참고3을 본 연구소가 요약

대비표에서 현행 열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같은 「현행」이라도 대통령령인 위임위탁규정에 있는 것과 행정규칙인 업무처리지침에 있는 것은 규범의 격이 다름. 공개모집과 재위탁 금지가 지침에만 있었다는 사실은 그 규율이 **행정 내부의 기준**으로만 존재하여 왔음을 뜻함.

제정안은 이 둘을 하나의 법률로 모으는 형식임. 대통령령에 있던 것은 격이 한 단계 오르고, 지침에만 있던 것은 **두 단계를 건너뛰어 법률에 놓이는** 것임.

III. 규범과 조문의 대조 (계속)

09 대비의 세 가지 특징

변화의 세 갈래

대비에서 드러나는 첫째 특징은 **지침에 있던 것이 법률로 올라간다**는 점임. 공개모집과 재위탁의 원칙적 금지는 이미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에 있었으나, 제정안은 이를 법률의 조문으로 옮기고 선정기준·배점·결과의 공개를 더하였음.

둘째 특징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다**는 점임. 계획 수립과 성과평가·종합평가는 현행 대통령령과 지침 어디에도 근거가 없었음.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었더라도 그것을 요구할 규범이 없었다는 뜻이며, 제정안은 이 빈자리를 법률로 메우려는 것임.

셋째로 **관리·감독의 수단이 늘어남**. 현행 규범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취소·정지와 지시·조치 명령을 두고 있다면, 제정안은 여기에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탁계약의 해제·해지**를 더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음.

다만 이 수단에는 절차가 함께 붙어 있음. 취소·정지나 해제·해지의 경우 위탁기관은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정지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수탁기관에게는 불복의 통로도 열려 있음. 계약의 해제·해지와 법정위탁의 수탁기관 변경 결정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7. 감독 수단과 따르는 절차

구분	수단	따르는 절차
사무처리 취소·정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문서 통보, 사전 의견 제출, 피해 최소화 보완대책
계약 해제·해지	수탁기관의 의무 등 계약 위반 시	문서 통보, 사전 의견 제출, 사실의 공개 , 이의신청
수탁기관 변경	법정위탁 재검토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 제출, 이의신청

자료: 제정안 제18조·제23조·제24조를 본 연구소가 정리

세 특징을 함께 놓으면 제정안의 성격이 드러남 — **홀어져 있던 규율을 한 법률로 모으고, 없던 계획과 평가를 더하며, 감독의 수단과 절차를 같이 규정**하는 것으로,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던 영역을 공통의 절차로 옮기려는 시도임.

III. 규범과 조문의 대조 (계속)

10 규범 격상의 효과

신설 규율의 성격

계획과 평가

새로 생기는 규율은 **계획과 평가**에 집중되어 있음. 선정과 감독에 관한 규율은 이미 대통령령과 지침에 어느 정도 있었으나, 부처를 가로지르는 계획 체계와 상위 평가는 근거 자체가 없었음. 제정안이 이 두 가지를 법률로 세우려는 것임.

규범의 격이 올라가는 데 따르는 효과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지침에 있던 사항이 법률로 옮겨지면 그 위반의 성격이 내부 지침의 불이행에서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으로 바뀌고,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다툼이 생겼을 때 사법 심사의 기준도 법률의 문언이 됨. 제정안이 위원회 설치와 계획 수립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문언의 정비

두 안의 세부 차이

주요 조문 외에 **문언을 다듬은 대목**도 여럿임. 조문의 실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나, 규정의 주어와 수단을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 읽힘.

표 8. 문언 정비의 사례

구분	2017년안	2024년안
목적	선정원칙·선정절차·관리감독	앞에 「민간위탁 추진체계」 를 더함
제10조 표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감사 결과 조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문책 요구
법정위탁 전환	공개모집 등을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	법정위탁 외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
현황의 제출	장관에게 통보	장관에게 제출

자료: 두 법률안의 조문을 본 연구소가 대조

제18조제3항의 문언도 다듬어졌음. 「취소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가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로 바뀌어, 위탁기관이 **직접 하는 조치**임이 분명해졌음.

제10조의 표제가 「기준」에서 「선정」으로 바뀐 것은 조문의 내용이 사무의 성질을 정의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선정이라는 행위와 그 절차**를 규율한다는 점을 표제에 반영한 것으로 읽힘. 법정위탁의 전환에서 「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전환하는 등의 노력」으로 넓어진 것은, 전환의 수단을 법령 개정에만 한정하지 아니한 것임.

III. 규범과 조문의 대조 (계속)

11 점검 기능의 이동

점검 기능의 이동

감사와 성과평가

감사에 관하여는 방향이 반대로 보이는 대목이 있음. 현행 지침은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정하나, 제정안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제정안은 성과평가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상위 종합평가에 올리도록 하였음. 정기 점검의 기능이 **성과평가와 종합평가로 옮겨지고**, 감사는 사안이 있을 때 쓰는 수단이 된 구성으로 읽힘.

이 구성에서는 성과평가가 제때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이 됨. 감사와 달리 성과평가는 **위탁기간의 만료라는 시점**에 묶여 있으므로, 위탁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평가의 시점도 불분명해짐. 2024년안이 위탁기간에 상한을 둔 것은 이 점에서도 의미를 가짐.

표 9. 점검 수단의 시점과 결과

구분	시점	결과의 쓰임
관리·감독	상시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시·시정명령, 취소·정지, 해제·해지. 결과를 연 1회 제출
감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조치·임직원 문책 요구. 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출
성과평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까지 (1년 이내 위탁은 30일 전)	재계약 판단 에 반영. 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출
종합평가	매년 (2024년안)	통보·공개, 시정 요구, 감사원 감사 의뢰, 포상

자료: 제정안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를 본 연구소가 정리

성과평가의 결과는 **재계약의 판단 근거**가 됨.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되, 감독상 조치의 이행 결과와 감사 결과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평가의 신뢰성이 곧 선정 절차의 정당성**으로 이어지는 구조임.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무의 공백을 막는 장치가 있음 — 새 수탁기관이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임.

2024년안은 여기에 **성과평가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더하였음. 2017년안이 종합평가에만 두었던 조사·분석의 위탁 근거를 부처의 성과평가에도 둔 것임.

III. 규범과 조문의 대조 (계속)

12 두 법률안의 공통 구조

유지된 기본 구조

2017년안 · 2024년안

두 안의 장 구성과 조문 번호는 거의 그대로임. 총칙, 민간위탁 추진체계, 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 관리·감독 및 평가, 법정위탁의 관리, 보칙의 여섯 장에 제1조부터 제26조까지가 같은 자리에 놓여 있음.

표 10. 두 법률안이 공유하는 구조

구분	조문	내용
민간위탁의 정의	제2조제2호	명칭에 관계없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게 하는 것
추진체계	제4~7조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 위탁기관 운영위원회 —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
계획	제8·9조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사무 선정	제10조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 고려사항 7개
수탁기관 선정	제11조	법정위탁을 제외한 공개모집 원칙, 요건에 따른 모집 대상 제한
법정위탁	제22·23조	전환 노력과 재검토기한 명시 —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 초과 불가

자료: 2017년 의안원문과 2024년 입법예고안의 조문을 본 연구소가 대조

사무 선정의 고려사항 일곱 가지 — 다른 방식의 운영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현황 — 도 두 안에서 같음. 학계가 지적해 온 **판단기준의 부재**에 대응하여 기준을 조문에 열거한 형식이 두 안에 공통으로 유지된 것임.

두 위원회의 심의사항도 거의 같음. 심의위원회는 정책·제도·법령의 개선, 기본계획,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고, 운영위원회는 시행계획부터 **사무 선정·수탁기관 선정·재계약·관리감독·감사·성과평가 결과**까지 아홉 가지를 심의함.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사무의 **전 과정에 걸쳐 있다**는 점이 이 설계의 특징임.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인 기구의 심의를 각 단계에 두어 부처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구간을 줄이려는 구조로 읽힘.

III. 규범과 조문의 대조 (계속)

1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선 적용의 범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한 제3조도 두 안의 문면이 같음.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하되, 두 조문에 저촉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 법이 우선한다는 구조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민간위탁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1조 및 제23조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2017년 의안원문과 2024년 입법예고안에 같은 문면으로 놓인 조항

우선 적용의 대상으로 고른 두 조문은 **수탁기관의 선정(제11조)**과 **법정위탁의 재검토키한(제23조)**임. 개별 법률이 달리 정하더라도 공개모집과 재검토는 관철하겠다는 뜻이며, 이 법률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임.

법정위탁이 77%인 현황에서 이 조항이 갖는 무게는 작지 않음. 법정위탁은 개별 법령이 수탁기관을 특정한 것이므로, 그 개별 법령의 규정이 재검토키한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일반법이 우선**하게 됨. 다만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저촉으로 볼 것인지는 조문의 해석에 맡겨져 있음.

제3조의 구조는 두 층위로 이루어져 있음. 앞부분은 **다른 법률이 우선**한다는 일반 원칙이고, 단서는 두 조문에 한하여 **이 법이 우선**한다는 예외임. 일반법이면서도 개별 법률에 자리를 내주되, 제도의 핵심에 해당하는 두 지점만은 지키겠다는 설계임.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규정」의 범위임. 개별 법률이 수탁기관을 특정한 사실만으로 특별한 규정이 되는지, 선정 절차나 존속을 명시적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해당하는지에 따라 **일반법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짐**. 조문은 그 기준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음.

이 구조는 일반법을 두는 다른 법률에서도 볼 수 있는 형식이나, 이 법률안의 경우 **우선 적용의 대상을 두 조문으로 좁혀 명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임. 일반법 전체를 관철하지 아니하고 핵심만 지키는 방식이므로, 개별 법률 체계와의 충돌을 줄이려는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경계는 다른 방식으로 그어져 있음. 제3조가 다루는 것은 **법률 사이의 우선순위**이고,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제2조제1호의 **정의에서 이미 갈리기** 때문임.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자치사무는 처음부터 대상 밖에 있음.

III. 규범과 조문의 대조 (계속)

14 법정위탁 관리의 조정

법정위탁 관리의 조정

제22·23조

우선 적용의 대상인 제23조는 두 안 사이에 **세부가 조정**되었음. 재검토기한의 상한(5년)과 90일 전 심의 요청은 그대로이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와 준용 규정이 달라졌음.

표 11. 법정위탁 관리 규정의 변화

구분	2017년안	2024년안
재검토기한 설정	위탁기관은 ... 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	주어 없이 —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법정위탁에 기한을 설정
심의 후 조치	법령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이에 필요한 조치 — 법령 개정의 문구가 빠짐
변경 시 준용	수탁기관을 변경할 때 제11조의 기준·절차를 준용하는 항이 있었음	해당 항이 삭제 됨
전환 노력	전환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법령 개정 노력	소관 법정위탁사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환 노력

자료: 두 법률안의 제22조·제23조를 본 연구소가 대조

전환 노력의 문언이 「전환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으로 바뀐 것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형식**임. 2024년안은 전환을 기본으로 두고 하지 아니할 사정을 요구하는 구조에 가까움.

다만 두 조문 모두 **노력 의무**의 형식이므로 그 자체로 전환을 강제하지는 아니함. 실제 구속력은 재검토기한의 설정과 90일 전 심의라는 절차에서 나오며, 그 절차가 개별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제3조의 취지임.

심의 결과의 처리에도 절차가 붙어 있음. 위탁기관은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024년안에서 제11조 준용 규정이 빠진 대목은 해석의 여지를 남김. 2017년안은 수탁기관을 변경할 때 선정의 기준·절차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으나 2024년안에는 그 항이 없음. 다만 제3조가 제11조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선정 절차가 적용될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III. 규범과 조문의 대조 (계속)

15 절차와 계약 규정의 변화

신설된 기간 제한

제13조제3항

2024년안이 새로 넣은 조문 가운데 실무에 가장 직접 닿는 것은 위탁기간의 상한임.

제13조(위탁계약의 체결)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024년 입법예고안 — 2017년안에는 없던 조항

2017년안은 위탁계약에 포함할 사항으로 「위탁기간」을 들었을 뿐 그 길이를 정하지 아니하였음. 2024년안은 여기에 **3년의 상한**을 두었음. 독점위탁의 장기화라는 진단을 계약 기간의 법정 상한으로 옮긴 것이며, 성과평가를 거쳐 재계약하도록 한 제17조와 결합하면 **3년마다 평가와 재계약의 판단이 돌아오는 구조**가 됨.

표 12. 절차·계약 규정의 변화

구분	2017년안	2024년안
위탁기간	정함 없음	3년 이내 (제13조제3항 신설)
재위탁 금지	사무의 일부 를 수탁기관이 아닌 자에게 재위탁 불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재위탁 불가 — 범위 확대
이의신청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운영위원회 정원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선정 고려사항	업무운영능력·서비스품질·비용절감·책임능력과 공신력 · 지역 간 균형분포 의 5개	앞의 4개 — 「 지역 간 균형분포 」 삭제
위원회의 자료 요구	위원회가 관계기관·수탁기관에 직접 요구	장관·위탁기관에 요청 하고 그 기관이 요구 — 현지조사 근거 추가

자료: 두 법률안의 조문을 본 연구소가 대조

변화의 방향은 둘로 나뉨. 위탁기간 상한과 재위탁 금지 범위는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고, 이의신청 결정기한과 운영위원회 정원은 **운용의 여유를 넓히는 방향**임.

III. 규범과 조문의 대조 (계속)

16 평가와 제재의 강화

평가 기준의 법정화

제20·21조

가장 크게 달라진 영역은 평가임. 2017년안은 성과평가와 종합평가의 대상·기준·방법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2024년안은 **평가 기준을 법률에 열거**하였음.

표 13. 평가·제재 규정의 변화

구분	2017년안	2024년안
종합평가 주기	실시 의무만 규정 — 주기 없음	매년 실시
성과평가 기준	대통령령에 위임	수행체계의 적정성, 전문성·성실성, 결과의 효과성 등 법률에 명시
종합평가 기준	대통령령에 위임	사무·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 관리·감독의 적정성, 감사·성과평가의 적정성 등 법률에 명시
평가 결과의 제재	위탁기관·수탁기관에 시정 권고, 징계처분 등 요구	위탁기관에 시정 요구 ,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의뢰
포상	규정 없음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공무원·임직원 포상 근거 신설
공무원 의제	수탁기관의 임직원	수탁기관 임직원 + 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자료: 두 법률안의 조문을 본 연구소가 대조

제재의 상대방이 옮겨 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17년안의 조치 대상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양쪽이었으나, 2024년안의 종합평가 조치는 **위탁기관을 향한** — 시정 요구도 위탁기관에 하고, 감사 의뢰도 위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것임. 종합평가가 부처의 **관리·감독 수행 자체를 평가**하는 상위 평가라는 성격이 조문에서 뚜렷해진 것임.

공무원 의제의 범위가 위원회의 민간 위원까지 넓어진 것도 함께 읽을 대목임. 사무 선정과 수탁기관 선정에 심의하는 민간 위원에게 「형법」의 수뢰죄 등이 적용되므로, 심의의 책임이 조문으로 무거워졌음.

III. 규범과 조문의 대조 (계속)

17 부칙의 정비

경과 규정의 확충

부칙 대조

부칙도 6개 조에서 9개 조로 늘었음. 시행일은 두 안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같으나, 시행 전후의 처리를 정한 조항이 촘촘해졌음.

표 14. 부칙의 변화

구분	2017년안	2024년안
선정 절차 적용례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시행 이후 최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위탁계약 적용례	없음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신설)
재위탁 특례	없음	시행 당시 재위탁 중인 사무는 2년까지 계속 재위탁 가능 (신설)
최초 종합평가	없음	시행일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실시 (신설)
존속기한 경과조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은 시행 후 1년까지 — 운영위원회 심의로 3년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양쪽 동일)	

자료: 두 법률안의 부칙을 본 연구소가 대조

신설된 부칙 조항은 대체로 **시행 직후의 혼란을 줄이는 장치**임. 특히 재위탁 특례는 현행 지침이 원칙적 금지를 이미 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며, 2년의 유예 안에 법령 근거를 마련하거나 재위탁을 정리하라는 요구로 읽힘.

선정 절차 적용례의 문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서 「최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로 바뀐 것은 적용 시점을 **계약이 아니라 선정 행위에** 맞춘 것임. 시행 전에 선정을 마치고 시행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절차 규정을 비켜 가지 않도록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시행 직후에 해야 할 일에도 기한이 붙어 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행 당시 소관 사무가 있는 위탁기관은 **1개월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고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한을 모아 보면 제정 이후의 일정이 드러남 — 공포 후 6개월에 시행, 1개월 안에 현황 공개, 3개월 안에 기본계획, 다음 연도 안에 최초 종합평가, 5년 안에 법정위탁 정비계획임. **시행 전 6개월의 준비**가 실무의 관건이 됨.

IV. 실무의 접점

18 적용 범위와 준비 사항

적용의 경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이 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를 대상으로 함(제2조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각 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므로 이 법률이 곧바로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일반법이 서면 조례와 지침의 **참조 기준**이 될 여지가 있음. 자치법규 영역의 쟁점을 다룬 연구도 이 점을 시사함 — 이경환·장교식(2023)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법제의 쟁점을 검토하면서 **일반조례와 개별조례가 각각 민간위탁의 근거가 되는지**를 주요 논점으로 다루었고, 최윤영(2014)은 조례가 신규 위탁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

준비 사항

제정 시 대비

표 15. 제정 시 준비가 필요한 사항

순번	구분	내용
1	법정위탁의 존속 근거	재검토기한 신설에 대비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를 정리 — 전체의 77%가 해당
2	위탁기간의 점검	3년을 넘는 기간으로 운영 중인 위탁의 계약 구조 확인
3	재위탁 실태	재위탁 중인 사무의 법령 근거 유무 — 부칙의 2년 유예 안에 정리
4	평가 자료의 축적	성과평가·관리감독 기록 — 종합평가의 기준이 법률에 명시됨
5	위원회 구성	공무원이 아닌 위원 2분의 1 이상 — 위원의 공무원 의제 적용에 관한 사전 안내

자료: 제정안의 조문과 현황 수치를 근거로 본 연구소가 정리

이 법률안이 세우려는 것은 **선정과 관리의 절차**이며, 본 연구소가 앞서 다룬 위탁금의 회계(KIEM-REPO-2024-01)나 원가 산정의 규범(KIEM-REPO-2023-01)과는 층이 다름.

다만 이 법률안은 **게시 시점에 국회에 제출된 단계**이며 확정된 법률이 아님. 앞선 두 번의 시도가 제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준비 사항은 **방향의 점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근거와 한계

인용한 자료

표 16. 이 보고서가 인용한 근거

근거	내용	기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의안원문(제20대 국회)	제안이유·조문·부칙 전문	2017. 4. 13. 제출
같은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안)	제안이유·조문·부칙 전문	2024. 9.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민간위탁 관리체계 혁신)	경과·현황 수차·현행 대비표	2024. 12. 24.
「정부조직법」·위임위탁규정·「지방자치법」	현행 규범의 총위	게시 시점 시행본

현황 수치는 보도자료 참고1에 수록된 값

조문 대조는 두 법률안의 전문을 장·조·항 단위로 대응시켰음. 표에 실은 것은 **실질이 달라진 대목과 문언이 정비된 대목**이며, 어미의 차이는 실지 아니하였음.

현행 규범과의 대비는 보도자료 참고3의 비교표를 근거로 하였으며, 이 표는 **소관 부처가 작성한 것임**.

참고 문헌

검토 범위와 인용 기준

표 17. 참고한 학술 문헌

저자	제목	출처
신상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32, 송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81-109
최윤영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연구 14(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4, 377-407
이경환· 장교식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법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경기도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56,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321-350
최순영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9, 418쪽

서지는 KCI 등재 정보와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으로 대조하였음

근거와 한계 (계속)

문헌 검토의 범위

주제와 관련된 학술 문헌은 KCI 등재 정보에서 「민간위탁」과 「법제화」를 축으로 찾아 검토하였음. 확인 범위에서 **국가사무 민간위탁의 일반법 제정 그 자체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은 많지 아니하였음**. 이는 법률안이 두 차례 폐기되어 제정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인용은 제정안이 다루는 **개별 쟁점에 닿는 범위로 한정하였음** — 위탁 범위의 판단기준과 관리·감독의 공백(신상민), 근거 규범의 체계와 조례의 역할(최윤영), 자치법규의 쟁점(이경환·장교식), 종합평가의 방법(최순영)이 그것임. 주제와의 거리가 먼 문헌을 억지로 연결하지 아니하였음.

이 보고서의 한계

유의 사항

2024년 12월까지 공개된 자료 기준임. **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단계로 확정된 법률이 아니며**, 심사 과정에서 조문이 달라질 수 있음. 제21대 국회에서의 재추진 경과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밝힌 사실의 범위에서만 적었고 의안의 세부는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조문 대조는 2017년 의안원문과 2024년 입법예고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입법예고안은 법제처 심사 전의 문면**이므로 국무회의 의결본과 다를 수 있음. 학술 문헌은 KCI 등재 서지와 공개된 초록에서 확인되는 범위로만 인용하였고 원문은 확보하지 아니하였음.

문의

내용의 문의는 **한국관리위탁연구소**로 하시기 바람.